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14. 12. 15.
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회장

□ 청가 의원 - 황인성 의원

[기간 : '14. 12. 15.(화) ~ 12. 22.(월) <8일간>]

- 사유 : 모친상(母親喪)으로 인한 청가

<참고사항> ----- **관련근거**

○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(청가 및 결석)

-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
-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